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1. 관련

- 가.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1.23.)
- 나.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312호, 2022.4.29.)
- 다.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872호, 2022.7.29.)
- 라.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37호, 2022.8.23.)
- 마.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보험급여과-5880호, 2022.11.28.)
- 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보험급여과-5881호, 2022.11.28.)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기존	변경
대면진료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수가 변경 적용 ('23.1.1.~'23.1.31.) * 불임 참고
대면투약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수가 변경 적용 ('23.1.1.~'23.1.31.) * 불임 참고
투약안전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23.1.31.까지 적용
노인·정신·장애인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2.12.31.까지 적용	'23.1.31.까지 적용

2.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 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특별시시장, 부산광역시시장, 대구광역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광주광역시시장, 대전광역시시장, 울산광역시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전결 12/19
정성훈

협조자 보건사무관 배윤영

시행 보험급여과-6262 2022.12.19.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shsong98@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승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붙임 1.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